

- 2023년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보고

2023. 5.

인천광역시중구
감 사 실

새로운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중구

요 지

- 감사대상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 감사기간 : 2023. 3. 27. ~ 3. 31. (5일간)
- 범 위 : 2021. 10월 ~ 2023. 2월 추진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3명
-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 행정상(건) | | | | 재정상(천원) | | | 신분상(명) | | | 기관 경고 (건) |
|--------|----|----|----------|---------|----------|-------|--------|----|----|-----------------|
| 계 | 시정 | 주의 | 개선 권고 | 계 | 회수 추징 | 추급 | 계 | 징계 | 훈계 | |
| 16 | 4 | 11 | 1 | 4,877 | 2,002 | 2,875 | 1 | - | 1 | - |

※ 주의·시정 중복에 따른 건수 불일치

【세부내역】

| 연 번 | 분 야 | 제 목 | 처분내역 | | | 비 고 |
|--------|--------|------------------------------|-----------------------|--------------------|------------|--------|
| | | | 행정상 | 재정상 (천원) | 신분상 (명) | |
| 계 | | 15건 | 주의 11 시정 4 개선 1 | 4,877 | 훈계1 | |
| 1 | 공단운영 | 보안업무 추진 소홀 | 시정 | | | |
| 2 | 공단운영 | 임직원 행동강령 등 정비 및 행동강령 책임관 미지정 | 주의 | | | |
| 3 | 공단운영 | 휴직자 복무 관리 부적정 | 주의 | | | |
| 4 | 공단운영 | 퇴직자 보수규정 개선 | 개선 | | | |
| 5 | 공단운영 | 가족수당 자체점검 소홀 | 주의 | | | |
| 6 | 회 계 | 관서업무비(정원가산업무비) 지출 부적정 | 주의 | | | |
| 7 | 회 계 |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및 여비 규정 개선 | 시정 | 회수 70 | | |
| 8 | 회 계 | 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시정 | 추급 2,875 환수 240 | | |
| 9 | 회 계 | 부서업무비 세출예산 과목 부적정 | 주의 | | | |
| 10 | 회 계 | 매식비 현금영수증 지급절차 부적정 | 주의 | | | |
| 11 | 회 계 | 공사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주의 | | 훈계1 | |
| 12 | 회 계 | 일상감사 미실시 | 주의 | | | |
| 13 | 회 계 | CCTV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 주의 | | | |
| 14 | 회 계 | 준공대금 정산 소홀 | 주의 시정 | 환수 1,692 | | |
| 15 | 회 계 | 수의계약관련 구비서류 확인 소홀 | 주의 | | | |

2023년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보고

2023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인천중구시설공단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례를 시정하고 개선하여 공단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I 감사 결과

1 총 평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9년 9월 설립된 이래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인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청사시설 및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 특히, 2022년 1월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범으로 문화 관광시설의 대관 및 운영을 (재)인천중구문화재단에 이관하고, 신규 사업으로 영종지역의 도시공원·녹지 등의 관리를 수탁받아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준공한 청소년 수련관을 수탁받아 2022. 7월부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함으로서 조직 및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각화하고 있음
- 이번 실시한 2023년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주요 지적 사항은 조직, 인사, 예산회계, 시설물 관리실태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공단 규정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시정 4건, 주의 11건, 개선 1건) 및 재정상 3건 4,877천원(회수 및 추급), 신분상 조치(훈계 1건)의 처분이 요구됨

- 또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지도·감독 부서에도 함께 통보하여 반기별로 시행하는 대행사업 지도·감독 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함

②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천원)

| 행정상(건) | | | | 재정상(천원) | | | 신분상(명) | | | 기관 경고 |
|--------|----|----|------|---------|----------|-------|--------|----|----|----------|
| 계 | 시정 | 주의 | 개선권고 | 계 | 회수 추징 | 추급 | 계 | 징계 | 훈계 | |
| 16 | 4 | 11 | 1 | 4,877 | 2,002 | 2,875 | 1 | - | 1 | |

※ 주의·시정 중복으로 인해 목록 수와 행정상 조치 목록 수 불일치

③ 처분요구 목록

| 연번 | 분 야 | 제 목 | 처분내역 | | | 비고 |
|----|------|------------------------------|-----------------------|-------------|------------|----|
| | | | 행정상 | 재정상 (천원) | 신분상 (명) | |
| 계 | | 15건 | 주의 11 시정 4 개선 1 | 4,877 | 훈계 1 | |
| 1 | 공단운영 | 보안업무 추진 소홀 | 시정 | | | |
| 2 | 공단운영 | 임직원 행동강령 등 정비 및 행동강령 책임관 미지정 | 주의 | | | |
| 3 | 공단운영 | 휴직자 복무 관리 부적정 | 주의 | | | |
| 4 | 공단운영 | 퇴직자 보수규정 개선 | 개선 | | | |
| 5 | 공단운영 | 가족수당 자체점검 소홀 | 주의 | | | |
| 6 | 회 계 | 관서업무비(정원가산업무비) 지출 부적정 | 주의 | | | |

| 연번 | 분 야 | 제 목 | 처분내역 | | | 비 고 |
|----|-----|------------------------|----------|--------------------------|------------|-----|
| | | | 행정상 | 재정상 (천원) | 신분상 (명) | |
| 7 | 회 계 |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및 여비 규정 개선 | 시정 | 70 | | |
| 8 | 회 계 | 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시정 | 추급 2,875 회수 240 | | |
| 9 | 회 계 | 부서업무비 세출예산 과목 부적정 | 주의 | | | |
| 10 | 회 계 | 매식비 현금영수증 지급절차 부적정 | 주의 | | | |
| 11 | 회 계 | 공사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주의 | | 훈계1 | |
| 12 | 회 계 | 일상감사 미실시 | 주의 | | | |
| 13 | 회 계 | CCTV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 주의 | | | |
| 14 | 회 계 | 준공대금 정산 소홀 | 주의 시정 | 회수 1,692 | | |
| 15 | 회 계 | 수의계약관련 구비서류 확인 소홀 | 주의 | | | |

II 세부 지적사항

1. 보안업무 추진 소홀

-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제1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제14조(보안담당관의 임무)에 따르면 공단의 전반적인 보안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당연직으로서 보안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또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보안교육, 비밀소유현황 조사, 서약의 집행,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안담당관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임직원 행동강령 등 정비 및 행동강령 책임관 미지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제2조에 따라 공단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이해충돌 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2022.5.19.일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2022.6.2.)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의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누락된 규정은 신설하는 등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행동강령책임관 및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감사일 현재 까지 미지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누락된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휴직자 복무 관리 부적정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휴직중 반기말일(6월 30일, 12월31일까지)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를 경영실장에게 제출하고, 휴직 상태 점검은 평가감사파트장이 정기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정기 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복무상황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며, 휴직자 상태점검에 대한 정기보고는 연 2회(1월, 7월)에 하고 필요시 수시 보고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인천중구시설공단에서는 휴직자 관리지침에 따라 [표 1]의 휴직자 1명에 대한 휴직실태 점검을 평가파트장은 2023. 1월초 까지 정기보고 실시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퇴직자 보수규정 개선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월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2014.2.7.개정되어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만 해당 월의 봉급 또는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보수지급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 보완 되었다.

☞ 인천중구시설공단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제15조제3항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된 때 ..(생략)..휴직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맞추어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만 해당 월의 봉급 또는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보수지급 요건을 강화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가족수당 자체점검 소홀

-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에 따르면 부양가족신고시 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시 기재된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당한 지급사례(특히, 부부 공무원이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중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이를 위해 부양가족신고서 접수 시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기관에서 지급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 란에 해당가족의 소속기관,

연락처 및 해당기관에서 지급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가족수당을 신청할 경우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또한, 소속기관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 기관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부양가족신고서 접수 및 자체 점검 시 배우자 수당 지급과 부모의 가족수당 지급에 따른 배우자·형제자매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에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가족수당 중복 지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6. 관서업무비(정원가산업무비) 지출 부적정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정원가산업무비에 따르면 연간계획 수립을 하여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직원 격려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며
- 또한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육행사의 취지로 정원가산업무비를 지출하면서 체육행사보다는 환경정비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님에도 체육행사와 캠페인 추진함으로써 정원가산업무비 예산액의 82%를 10월, 11월에 진행한 체육행사에 편성하는 등 연간 배분 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7.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및 여비규정 개선

-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인천시 관내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거리의 출장지는 관내 출장지로, 기타 지역은 관외 출장지로 구분하며,

- 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하고 관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규정 제 15조(준용)에 따르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4시간 미만, 관용차량 이용 출장자에 대하여 1만원 감액을 하지 않고 지급하였으며, 여비 정산 기한인 14일을 경과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8. 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된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이전에 퇴사한 중도퇴사자에게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하였으나,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미사용 연가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중도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보다 퇴직일이 낮은 경우 연가 가산휴가 발생 시점이 다름에도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가 일수 계산으로 인한 연가 오차로 인한 미지급하거나 과지급한 사실이 있다.

9. 세출예산 과목 부적정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 부서업무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로서 부서 운영에 따른 공통 경비이므로 부서장의 활동 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 정원가산업무비에 따르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직원 격려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다.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원가산업무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생일맞이 기프트콘 구입'을 부서업무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10. 매식비 현금영수증 지급절차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 별표 및 별지서식 - (별표 5)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 1.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등록 및 관리 - 3.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1개월 이하의 일정기간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 할수 있다(특근매식비의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로 규정되어 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현금영수증 사전품의를 미이행하거나 초과근무대장, 현금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로 미첨부한 사실이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후 5일이 경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11. 공사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전기공사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제1항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전기공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전기공사업체가 아닌 전문건설업체(시설물유지관리업)와 계약 체결하였다.

12. 일상감사 미실시

-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제4조(감사의 구분) 제5항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통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일상감사의 내용은 감사일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정기감사, 특별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일상감사 대상 건임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 대상 금액 범위의 종량제봉투 구입 및 예산의 전용, 업무추진비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13. CCTV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제2장(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8조(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제1항에 따르면 운영책임자는 일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시설 내 CCTV 설치 공사 하기 전에 행정예고 등의 사전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14. 준공대금 정산 소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에 관하여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입찰공고 시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한다.

- 또한,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용역 1건에 대하여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료 정산없이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15. 수의계약관련 구비서류 확인 소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 작성 승인을 받아 기관이 조사·공포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동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자이행각서(기간 미명시) 및 계약 보증금 지급 각서, 수의각서 등의 구비서류를 미첨부하는 등 구비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